

##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F-1-12) (공관원과동일국적)

**신청 요건:**

**F-1-12: 주한외국공관원의가사보조인 ( 공관원과동일국적 )**

주한외국공관원의가사보조인을 위한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몽골 국민 또는 거주자는 비자신청센터를 통하여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1년 이내 단수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준비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사증신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3. 무범죄증명서(만18세이상 60세 미만, 최초 방문자에 한함)
4.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사본 제출)
5. 결핵 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발행)
6.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7. 고용계약서
8.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